

의안번호	제 11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의안 번호	1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·운영과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수수료 및 우송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
-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,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 ~ 제5조)
-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6조)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절차·방법 등(안 제7조 및 제9조)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의 청구·납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) ①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.

1. 영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고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2.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
3. 전문가,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시·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
5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재 주요 공공기관, 기업,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.

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제5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.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제12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한다.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회의록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⑧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.

제6조(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제3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① 도지사는 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인정보파일 관리)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(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통하여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.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·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9조(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)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보유 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,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,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제11조(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)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(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)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,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의 요구,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(이하 "열람등요구"라 한다)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이미 납부한 비용은 해당 열람등요구 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이의신청)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다.

제13조(보험·공제 등의 가입) 도지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개인정보 열람 등 수수료 징수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

구 분	기준	금액
1. 개인정보파일 열람	1건	500원
2. 개인정보파일 정정	1건	500원
3. 개인정보파일 사본	1매	500원

[비고] 우송료는 「우편법」 제19조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.

[별지 서식]

개인정보 유출신고서(제9조제1항 관련)

기관명					
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					
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					
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					
유출피해 최소화 대책·조치 및 결과					
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					
담당부서·담당자 및 연락처		성명	부서	직위	연락처
	개인정보 보호책임자				
	개인정보 취급자				

유출신고접수기관	기관명	담당자명	연락처

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및 의무, 역할, 절차·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정보주체 등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
- 개인정보 침해 피해 손해보상 보험·공제 가입 비용

3. 관련조문

- 협의회 운영(안 제5조)
- 보험·공제 등의 가입(안 제13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'22년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기준 적용
- '22년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적용

나. 추계 결과

- 위원 출석수당('23년부터 향후 5년간) : 4,500천원(9명x100천원x5년)
-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('23년부터 향후 5년간) : 100,000천원(20,000천원x5년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김태용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20,900	20,900	20,900	20,900	20,900	104,500
위원회 수당	900	900	900	900	900	4,500
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20,900	20,900	20,900	20,900	104,500
	지방세	20,900	20,900	20,900	20,900	104,5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관련법령 발취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“가명정보”라 한다)

1의2. “가명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개인정보파일”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
5. “개인정보처리자”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, 오용·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·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·지원하여야 한다.

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7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, 업무, 자격요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2.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
3.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의 처리방법
5. 개인정보의 보유기간
6.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2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3.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4.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
5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

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)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인정보취급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행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
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제5조의3(시·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)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시·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(이하 “시·도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시·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시·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

2.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
 3.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
 4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·도협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)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

마.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: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
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 등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.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. 다만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 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2.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3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
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